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76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7.
판 결 선 고	2015.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744,000원, 농어촌특별세 2,360,000원, 지방교육세 944,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3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2. 4. 6. B 소유인 [redacted]시 [redacted]구 C아파트 [redacted]동 [redacted]층 [redacte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이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47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9,513,630원, 농어촌특별세 2,378,400원, 지방교육세 951,360원 합계 12,843,390원의 세액(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나. 위 2012. 4. 6.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자 [redacted] 주식회사로 된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621,600,000원(실제 채무액 430,000,000원) 및 39,200,000원(실제 채무액 42,000,000원)이었다(이하 위 D의 [redacte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세액을 모두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경정사유란에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일산서구청에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하여 증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의 기재는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의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양수인이 그 계약일에 목적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양수인이 목적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3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경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 12. 11.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3. 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8. 14. 임의경매로 인하여 E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른바 부담부 증여이고, 부담부 증여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는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을 이행한 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redacted] 주식회사가 파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이 E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한 이 사건 세액은 경정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6.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3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부채 잔액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같은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원고 주장의 부담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증여계약에 원고 주장의 부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은 증여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 증여는 유상계약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부관이 붙어 있는 증여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을 이행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3

재판장 판사 [redacted]남[redacted]

판사 [redacted]윤[redacted]

판사 [redacted]윤[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3

별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3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